

### 악취 배출시설 여부



악취배출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당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은 P,P(폴리프로필렌)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압출, 성형후 필름을 제조하는 공정 중 권취(필름을 보빈(철관)에 감는공정)하기 전 양끝에서 잘려나온 필름 SCRAP 및 공정중 불량제품을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크기로 압축하는시설입니다.

압축과정은 고체상의 필름 SCRAP 및 공정중 불량 필름 제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단순히 물리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상기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시설에서, 압축하는 필름의 원료인 P,P(폴리프로필렌)은 MSDS상 냄새가 없는 물질이며, 압축작업시에도 전혀 악취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폐기물처리시설(압축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제 2호 비고 1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폴리프로필렌 압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시설에서 악취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의 정의



저희 회사는 금속을 다루는 회사인데요,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 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이럴경우에 배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환경법상의 연마시설, 선별시설, 탈사시설, 탈청시설에 대한 정의와 거기에 속하는 기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연마시설」이라함은 연마숫돌을 고속 회전시켜 절삭 혹은 가공하는 시설과 절삭 능력이 작은 연마재료를 사용하거나 연마재를 사용하지 않고 표면청정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시설에는 절삭·연삭시설을 포함한다.

• 「탈사시설」이라함은 유체의 분사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금속품, 특히 주물품에 붙어 있는 모래를 제거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로 슛트부라스트 샌드부라스트 및 텀블러 등이 있다.

• 「선별시설」이라함은 체, 유체 비중등을 이용하여 원료나 제품을 일정한 크기나 형상별로 분류하는 시설로 평면선별기, 회전선별기, 진동선별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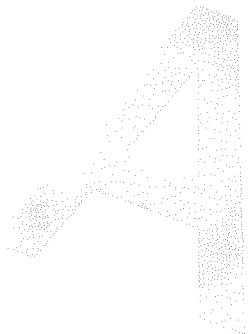
• 「탈청시설」이라함은 금속재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 시설로 기계적 탈 청에는 탈사에 사용하는 슛트부라스트, 샌트부라스트를 사용하고, 화학적탈청에는 염산등을 사용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최근 새로이 생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 제17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하면서 착공에서 완공시까지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사법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1) 그렇다면, 단순히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분을 받지 않나요?

질의2)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보관 기준인 90일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사업장내에 보관하였다면 같은법 제13조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을 받게 되나요?

질의3)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배출 신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배출신고자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한 신고대상(5톤 이상 발생 사업장)사업장도 포함되나요?

질의4)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처분을 받게 되는 데 여기서 처리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예를 들어 공사장내에 보관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장외의 타 장소로 폐기물을 차량을 이용 운반하여 쌓아 놓는 것도 처리에 포함이 되나요. 처리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 주십시오.

**A** 질의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2)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별도의 조치없이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면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의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가목의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라 함은 실제 배출자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4)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한 경

우”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 수집·운반·보관하는 것 외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질의1)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 공동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장 밀집지역은 아니나 사업장이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을 경우 공동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어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할 경우 지켜져야할 제반사항도 문의드립니다.

질의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하려고 한다면 신고시 필요조건과 공동처리가 가능하다면, 공동처리시 지켜야할 제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질의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각 호별로 공동운영기구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의2, 3) 공동운영기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운영기구 구성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공동운영기구 협약서, 회원명부, 각 업소별 발생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방법 등을 첨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 하는 경우에는 운

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동운영기구 구성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임목폐기물 처리주체

**Q**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 277호)에 따르면 종전의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 폐목재에 해당되던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서 분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질의1)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 277호)에 따르면 종전의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 폐목재에 해당되던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서 분류되어야 하는 것에 따라, 지침의 발효시점이 기존수행중인 건설현장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또한 적용된다면 종전의 공사수행에 신고된 사항의 변경시점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질의2) 분리발주를 따르는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처리주체는 발주자 즉, 사업수행자인데 종전에 발주처가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의 적용에 따라 원도급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임목 신고의 주체가 되는지요?

동일한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A**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2006년 4월 1일 이후 배출자신고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자신고 및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신고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이미 건설폐기물로 배출자신고 및 위·수탁계약 체결된 임목폐기물에 대하여는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하지 않고 기 신고한 바대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폐수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 경주에 본사를 둔 (주)아주베스틸포항공장의 환경관리인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만원 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포항공장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종별은 3종이구요 허가사항은 pH, COD, SS, n-h(광유)입니다. 공정에 염산이 쓰이기 때문에 가성소다로 중화하고 응집제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주 본사의 도금공장에서 냉각수를 교체해야합니다. 냉각수에는 CrO<sub>3</sub>(무수크롬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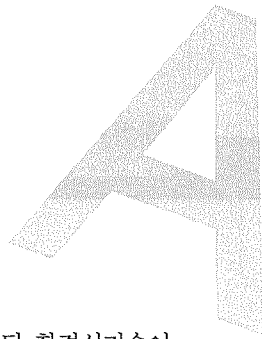
냉각수의 양은 약 20M<sup>3</sup>(루베)정도 됩니다.(현재 냉각수 샘플을 측정업체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질의1) 경주공장의 냉각수를 포항공장으로 이송을 해와서 처리하는게 적법인지?

질의2) 허가받은 사항이 4가지 항목인데 크롬이 포함된 폐수를 처리해도 괜찮은 건지?

질의3) 냉각수를 주기적(약3개월)으로 교체해야하는데 폐수발생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의4) 위 질문들에 의한 폐수처리가 불법이면 위탁처리를 해야하는지?



**A**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다른 배출시설의 사업장으로 이송은 불가능하며 3개월 주기로 냉각수를 교체하여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폐수는 자가 처리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환경신기술 신청**

**Q**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신기술을 신청하였으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특허 등)에 관련된 소송, 타 부처의 신기술 지정신청 취소소송(이미 신청기술이 타 부처에서 시행한 신기술로 지정받은 경우)이 현재 진행 중인데 정상적으로 그 기술로 환경신기술을 신청하여 환경신기술 심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A** 환경신기술 신청자격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만 가능하며, 신청기술은 국내·외 분쟁소지가 없고 타인의 산업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신기술평가로 신청된 기술에 대해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환경신기술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Q** 도금시설중 산처리시설에서 산처리후 물로서 세척(수세)를 하게 되는데 이 수세물은 over flow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폐수처리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세물의 산도가 pH2 정도 일때 이런 경우 폐기물 허가증에 수세물은 액상 폐기물로서 분류 신고 되어야 하는지 그냥 폐수로서 분류되어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A**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카리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폐수배출시설에서(기타수질오염원 포함)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카리는 수소이온 농도(pH)관계없이 폐수로 분류하여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 지정폐기물처리업체 및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카리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는 [www.keef.or.kr](http://www.keef.or.kr) 입니다.